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더불어민주당 중랑 제1선거구 이영실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70호

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
(20.6.4.공포 시행)사항을 반영하여

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의 서울시의회에 결산서 제출기한을
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려는
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